

보도시점 2026. 6. 25.(목) 12:00 / 배포 2026. 6. 25.(목) 08:30
<6. 26.(금) 조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편의점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 강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위약금 관행 개선 위해 편의점본부 한자리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2026. 6. 26.(금) 오후 2시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업종 분쟁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모든 갑을분야 중소기업자 원스톱 피해구제 지원 및 분쟁 예방 활동 수행을 위해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26.4.1.)

< 간담회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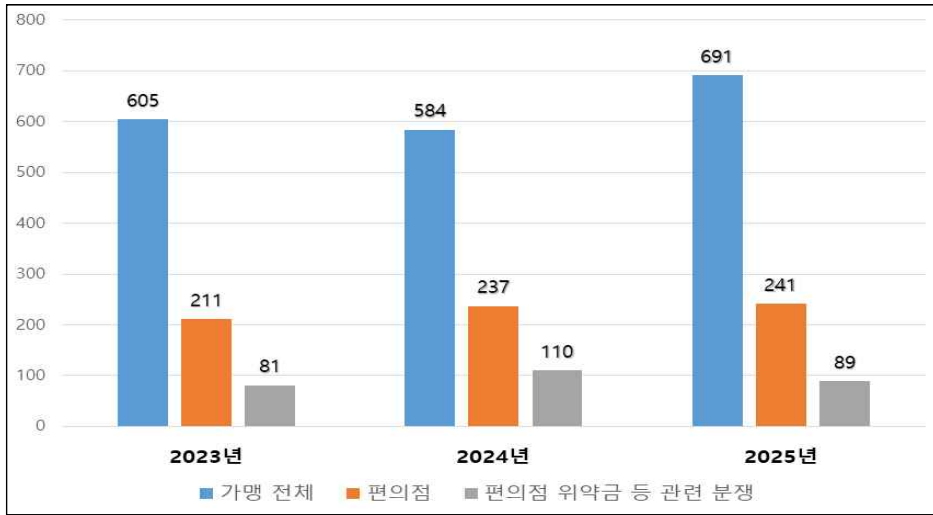
- 일 시 : 2026. 6. 26.(금) 14:00
- 장 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심의실
- 참석자 : 편의점 가맹본부 5개사 임직원
- 주요내용 :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제언 및 의견 청취

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 **업계 내 갈등 요소를 완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편의점 가맹본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추진되었다.

실제 최근 조정원의 분쟁조정 데이터에 따르면 편의점 관련 분쟁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5년에도 분쟁조정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총 691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 편의점 5개사 분쟁이 241건으로 34.9%의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분쟁유형으로는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분쟁이 가맹분야 691건 중 16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23.3%)를 차지했으며 이 중 편의점 5개사의 분쟁은 89건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3년간 편의점 위약금 분쟁조정 접수현황>



이날 간담회에는 편의점 5개사(주비지에프리테일, (주)지에스리테일, (주)코리아세븐, (주)이마트24, (주)씨스페이스시스) 분쟁조정 담당자가 참석 예정이다.

간담회는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제언 및 의견 청취, ▲편의점 분쟁 조정 관련 건의사항 수렴 등의 내용으로 진행 예정이다. 조정원은 가맹본부 측에 해지 위약금 부과 관행 개선 및 점주협의회와의 성실 협의 의무 준수 등 자율적인 상생 협력 기조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편의점 가맹본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지원하고자 한다.

아울러, 올해 4월 정식 개소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편의점 가맹 본부를 대상으로 한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시하고 편의점 점주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편의점 분야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1.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등 관련 분쟁조정 사례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일반현황

담당 부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책임자	팀 장	김승민 (02-6363-9280)
	상생협력실 공정거래종합지원팀	담당자	대 리	황재린 (02-6363-9283)



1. 중도해지 영업위약금 부과 관련 사례

- 편의점주 A씨는 양수도한 점포를 운영한지 4개월 만에 영업 적자 누적으로 편의점 가맹본부 B사에 폐점을 요청하였는데, 계약기간 5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폐점 비용 외에도 약 1,000만원의 영업위약금을 부과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A씨는 매출 저조로 인한 불가피한 중도해지임에도 본부가 과도한 영업위약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하였고, B사는 매장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매출이 저조했더라도 중도해지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A씨의 매장 운영기간 중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매장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영업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2. 특별장려금 전액 반환 요구 관련 사례

- 편의점을 운영하던 C씨는 계약종료 시점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5년 5개월(65개월)로 하고 편의점 가맹본부 D사로부터 특별영업장려금 5,000만원을 제공받았다.
- 이 과정에서 C씨와 D사는 계약기간 중 점주의 요청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지원받은 특별장려금 전액을 D사에 반환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C씨가 갱신계약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해지를 요청하자 D사가 합의서를 근거로 C씨에게 특별장려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합의서에 따른 D사의 특별장려금 반환약정은 유효하지만, 가맹계약(65개월)과 매장 임대차계약(60개월)의 만료 시점이 달라 C씨가 매장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특별장려금 전액 반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을 고려해서 반환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이에 협의회는 임대차계약 만료시점까지 가맹계약을 유지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점 이후 약 5개월 분에 해당하는 특별장려금 400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설립목적

- 분쟁조정 업무를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자를 신속히 구제해주고자 2007년 설립

※ 설립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2. 주요 업무

-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기업자 피해구제
 - 일반불공정거래·가맹·하도급 등 6개 분야 사업자 간 분쟁조정
 - ※ 2025년 4,726건 접수 및 4,407건 처리, 2024년 4,041건 접수 및 3,840건 처리
-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운영
 - 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 관련 상담, 교육, 법률조력 등 사업자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 업무 수행
- 공정거래 문화확산 업무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공정거래 분야 협약이행 평가, 하도급대금 연동확산지원본부, 동의의결 및 시정조치 이행관리
- 공정거래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 시장분석 및 사업자 거래행태 분석, 공정거래 제도와 정책연구,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영향평가 수행 등

3. 예산 및 조직 규모(2026년 기준)

- 예산액: 16,583백만 원
- 정원: 125명
- 조직: 4실 1센터 16팀